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균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94 발의연월일: 2024. 8. 22.

발 의 자: 박균택·김문수·주철현

한민수 • 박선원 • 양부남

서영교 · 이성윤 · 이건태

황정아 · 장경태 · 이재강

김승원 · 김용민 · 김현정

전혀희 • 노종면 • 조인철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판, 검찰,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수사현실은 과거의 고문 등 폭행이나 가혹행위와는 달리 협박이나 폭언 또는 회유를 통해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수사기관 등에 의한 폭행, 가혹행위에 더하여 협박,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 회유하는 행위,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

환 조사를 남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속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25조).

법률 제 호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5조의 제목 "(폭행, 가혹행위)"를 "(폭행, 가혹행위, 협박 등)"으로하고, 같은 조 중 "폭행 또는 가혹행위를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"로 하며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폭행
- 2. 가혹행위
- 3. 협박
- 4.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 회유하는 행위
- 5.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남용하는 행위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25조 <u>(폭행, 가혹행위)</u> 재판, 검	제125조(폭행, 가혹행위, 협박 등)		
찰,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			
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			
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			
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			
밖의 사람에 대하여 <u>폭행 또는</u>			
<u>가혹행위를</u> 한 경우에는 5년	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		
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	<u>해당하는 행위를</u>		
격정지에 처한다.			
<u><신 설></u>	<u>1. 폭행</u>		
<u><신 설></u>	<u>2. 가혹행위</u>		
<u><신 설></u>	<u>2. 협박</u>		
<u><신 설></u>	3.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		
	약속하는 등 회유하는 행위		
<u> <신 설></u>	4.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		
	사를 남용하는 행위		